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03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안 제44조 의7 제1항 제6호의4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3. 11.

다. 회 부 일 : 2025.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의 비법정탐방로 이용 적발 건수는 총 5,285건에 달하며, 동 기간 동안 비법정탐방로 이용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당하는 등 비법정탐방로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법정탐방로는 조난과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출입 또는 통행이 금지·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난 시에도 조난자가 선불리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위험할 수 있음에도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의 사실을 공유하거나 출입 등을 모집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되고 있어 비법정탐방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법정탐방로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금지·제한된 지역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해당 지역에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u>금지·제한된 지역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해당 지역에 출입</u>

현행	개정안
7.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 7.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보호 및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이하 “비법정탐방로”)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²⁾.

- 동법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³⁾.

○ 그런데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법정탐방로 출입과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가 공유·확산되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 단속한 2,796건의 불법행위 중 813건(29.1%)이 비법정탐방로 출입 관련으로, 불법행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⁴⁾.

- 또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비법정탐방로 출입과 관련하여 6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19명에 달함⁵⁾.

○ 이에 개정안은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하며, 이 중 국립공원의 경우 2024년 기준 총 면적 6,888.394km² 중 약 334.256km²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2025 국립공원기본통계」).

3)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4) 국립공원공단, 「2025 국립공원기본통계」, p.78.

5) 이화영, ‘비법정 탐방로 산행에 5년간 사고 68건…예방 어려워’, 연합뉴스TV, 2024.10.21.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⁶⁾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탐방객의 안전과 자연공원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어떠한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을 명할 수 있게 됨⁷⁾.

6)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불법정보 제도의 취지 및 다른 불법정보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행 불법정보 제도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모두 동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임.
- 반면 개정안에 따른 정보는 비교적 경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현행법상 다른 불법정보와 비교하여 볼 때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는 것이 법체계 및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함.
- 둘째, 타법상 유사 위반행위 관련 정보와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현행 「산림보호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8)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 동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⁹⁾.

○ 입산통제구역 지정은 자연환경과 등산객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비법정탐방로 지정과 그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함을 고려할 때, 입산통제구역과 달리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만을 불법정보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로 지정하기보다는,

「자연공원법」에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 공유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근거를 직접 마련하거나,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는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예시한 것으로 위반 시 형사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9) 제5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자연공원법」이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정 형사처벌조항을 충족시키는 행위에 관한 정보인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의 경우 그 불법의 정도나 유통으로 인한 사회 혼란·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기존의 불법정보와 같은 층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불법정보로 규율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는 그 불법성이 명백하여 수범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반면, 비법정탐방로 출입·통행 관련 정보는 이용자가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른 불법정보와 달리 관련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약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